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01
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21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10월 31일, 이상목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17년 11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상목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장에  
게 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 
통해 대피소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(1)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(안 제43조의2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    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# 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
[표]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

- 서울시는 금년 5월 ‘지진 옥외대피소, 실내구호소 확충 계획(상황대응과-7264, 2017.5.)’을 수립하여 지진대피소 확충 및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,
- 2017년 9월 기준 서울시 지진대피소는 옥외대피소 1,721개소와 실내구호소 563개소로 총 2,28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, 이 중 650개소에만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설치가 미진한 실정이라 하겠음.

- 한편, 행정안전부(구 국민안전처)에서는 2017년 4월 지진대피소 표지판에 대한 KS국가표준 등 관련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통일된 규격의 표지판 설치를 위해 「지진 대피소 표지판 설치 기준」을 마련하였으며,
- 지방자치단체의 표지판 설치 확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소요예산 일부를 지원할 예정<sup>1)</sup>에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짐.

---

1) 국민안전처 정책설명자료(2017.4.6.)

1. 지지 및 지진해일 대피소, 손쉽게 확인하세요.  
2. 국민안전처,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!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〈신설〉</p>	<p>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